

##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개정(기획재정부훈령 제2023-662호)

### -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방법 현행화 및 불복 사안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 등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및 개정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관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제개정이유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 등을 신청한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II. 주요내용

##### 1. 조문 정비(안 제4조제4항)

- “세법”과 “세법 등”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세법 등”의 범위를 제1호에서 규정한 “세법”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 2.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 현행화

- (현행)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을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함

##### 3. 조직개편 반영(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5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 (현행) '22.12.27. 개정 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접수 및 배분 등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조세법령운용과장이 담당함
- (개선방안) 직제 개편을 반영하여 조세정책과장이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4.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안 제10조제2항 신설)

- (신설) 불복 중인 사안의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예규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이 명백한 단순 문리 해석인 경우 및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현행	개정안
<신설>	<b>제10조(세법 등 해석의 검토)</b> ②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립된 판례나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는 경우 2. 세법 등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3.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난 경우

## 5. 세법해석 사례 공개방법(안 제14조)

-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
- (개선방안)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 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붙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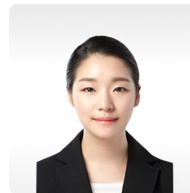
[붙임3]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2023-662호)

## | Contact



소유희 관세사

T 02-6011-3012  
E yhso@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